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실용신안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첨단전략기술에 대해 심사역량을 집중하고 우선심사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 대상별로 긴급처리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우선심사의 대상을 정비하는 한편,

실용신안법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개정(법률 제16804호, 2019. 12. 10. 공포, 2020. 3. 11. 시행 및 법률 제18505호, 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에 따라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을 정비하고, 새로 도입된 분리출원 제도와 관련된 사항을 실용신안공보 게재사항에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우선심사의 대상 정비(안 제5조)

우선심사의 대상에서 긴급처리 필요성이 떨어지는 전문기관 선행기술조사의뢰 우선심사(제12호), 65세 이상인 사람 및 건강에 중대한 이상이 있는 사람의 우선심사(제13호가목 및 나목)를 삭제함.

나.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정비(안 제6조의2)

1) 실용신안법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개정된 특허법 제10조에 따라

‘개임 명령’을 ‘교체 명령’으로 어려운 용어를 순화함(제1항제1호가목).

2) 실용신안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개정된 특허법 제6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심사 청구대상이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된 출원’뿐만 아니라 ‘실용신안등록결정된 출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실용신안권 존속기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에 실용신안등록결정 등본 송달일부터 재심사에 따른 실용신안등록 여부결정일까지의 기간을 추가함(제1항제1호하목).

3) 실용신안권 존속기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중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와 관련된 기간으로는 출원인의 청구에 의해 심판의 청구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만큼의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32조의17에 따른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와 관련된 기간으로서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등본 송달일부터 심판청구일까지의 기간으로 확대함(제1항제1호나목, 제1항제1호너목 신설).

다. 실용신안공보 게재사항 정비(안 제7조)

실용신안공보에 실용신안법 제11조에서 준용하는 개정된 특허법 제52조의2에 따른 분리출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2항제4호 및 제3항제5호).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8. 24.~10. 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의2제1항제1호가목 중 “**대리인의 개입**”을 “**대리인을 바꿀 것**”으로, “**개입된**”을 “**교체된**”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심판의 청구기간 또는 실용신안등록**”을 “**실용신안등록**”으로 하며, 같은 호 하목 중 “**실용신안 등록거절결정**”을 “**실용신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으로 하고, 같은 호 너목부터 어목까지를 각각 더목부터 저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32조의17에 따른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심판 청구 전에 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32조의17에 따른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심판을 청구한 날까지의 기간 제7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변경출원 또는 분할출원**”을 각각 “**분할출원, 분리출원 또는 변경출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출되는 우선심사신청부터 적용한다.

제3조(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우선심사를 신청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제5조제12호 및 제1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의2제1항 제1호나목 및 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용신안등록거절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심판이 청구된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법 제22조의2에 따라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6조의2제1항제1호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심사 청구된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법 제22조의2에 따라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우선심사의 대상) 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말한다.	제5조(우선심사의 대상) ----- ----- ----- ----- ----- -----.
1. ~ 11. (생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u>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에 관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행기술의 조사 또는 특허분류의 부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 중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의 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실용신안등록출원</u>	<u><삭 제></u>
13.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 실용신안등록출원</u>	<u><삭 제></u>

가. 65세 이상인 사람

나. 건강에 중대한 이상이 있
어 우선심사를 받지 아니
하면 실용신안등록결정 또
는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까지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을 것으
로 예상되는 사람

제6조의2(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① 법 제22조의2제3항에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실용신안등록에 관
한 절차에서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가. 법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0조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이 대리인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도록 명하거나 대리인의 개입을 명한 경우에는 그 명한 날부터 대리인이 선

제6조의2(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
된 기간) ① -----

1. -----

가. _____

-----대리인을
바꿀 것-----

임되거나 개입된 날까지의
기간

나. 법 제3조에 따라 준용되
는 「특허법」 제15조제1
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
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심
판의 청구기간 또는 실용
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이 연장된 경우
에는 그 연장된 만큼의 기
간(기간이 연장된 후 법 제
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
허법」 제15조제2항에 따
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
여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이 단축
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만
큼의 기간은 제외한다)

다. ~ 파. (생략)

하. 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
는 「특허법」 제67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재심사
를 청구한 경우에는 재심
사 청구 전에 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실용

-----교체된-----

나. -----

-----실

용신안등록-----

다. ~ 파. (현행과 같음)

하. -----

-----실용

신안등록거절결정의 등본
을 송달받은 날부터 특허
청장이 재심사에 따른 실
용신안등록여부의 결정을
한 날까지의 기간

거. (생략)

<신설>

너. ~ 어. (생략)

2. ~ 4. (생략)

② (생략)

제7조(실용신안공보) ① (생략)

신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
안등록거절결정-----

거. (현행과 같음)

너. 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

는 「특허법」 제132조의17
에 따른 실용신안등록거절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심
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심
판 청구 전에 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실용
신안등록거절결정의 등본
을 송달받은 날부터 법 제
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32조의17에
따른 실용신안등록거절결
정에 대해 불복하는 심판
을 청구한 날까지의 기간

더. ~ 저. (현행 너목부터 어
목까지와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실용신안공보) ① (현행과

② 법 제21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3. (생략) 4. <u>변경출원 또는 분할출원에 관한 사항</u> 5. ~ 10. (생략) ③공개실용신안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게재하지 아니한다. 1. ~ 4. (생략) 5. <u>변경출원 또는 분할출원에 관한 사항</u> 5의2. ~ 10. (생략) ④·⑤ (생략)	같음) ② ----- ----- -----. 1. ~ 3. (현행과 같음) 4. <u>분할출원, 분리출원 또는 변경출원</u>----- -- 5. ~ 10. (현행과 같음) ③----- -----.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분할출원, 분리출원 또는 변경출원</u>----- 5의2. ~ 10.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특허청 특허제도과	
연 락 처	(042) 481 - 8153